

서울지방세무사회-세무정보(2023-04)

□ 4월의 세무일지

구 분	세 무 일 지
4월 1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 ▪ 원천징수분 법인세·소득세·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신고납부 ▪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▪ 4대보험료 납부 ▪ 12월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신고납부
4월 17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
4월 2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▪ 3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기한 ▪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
5월 2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2월말 결산법인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▪ 12월말 결산법인(일반)법인세 분납분 납부기한 ▪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고시 ▪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▪ 3월 지급분 일용근로자(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)의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▪ 3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▪ 2023년 3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(일용근로제외)

□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세무조정시 발생한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

- 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소득처분 중 상여, 배당, 기타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.

소득처분	귀속자의 소득구분	소득의 지급시기	소득의 귀속시기
상 여	근로소득	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(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)	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
배 당	배당소득		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(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)
기타소득	기타소득		

- ② 법인은 위의 지급시기(원천징수시기)에 원천징수하여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③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인정상여의 경우 2022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

(1)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범위 조정

-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4월 10일까지 예정고지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.
- ②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.
- ③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-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자
-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

(2) 예정신고 대상사업자의 예정신고시 유의사항

- ①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.
- 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시점에서 국세청 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간혹 조회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지연발급 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누락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③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내역 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 특히, 비영업용승용차 구입, 임차 등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분으로 신고되어 추후 매입세액이 추징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④ 대손세액공제신청은 확정신고할 때만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(기획재정부부가-538, 2014.09.05., 서면법령해석부가2019-1759, 2019.07.17.) 따라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한 세금계산서를 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예정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때 매월 10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발급 또는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(3)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

- 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(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)의 0.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- ② 2022.1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(4) 납부기한등 연장등의 신청

- 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. 따라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-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-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②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의 [신청/제출]-[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]-[신고분납기한 연장신청] 또는 [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(구.징수유예) 신청]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 시 담보제공을 세금포인트로 활용하세요

-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담보면세 신청 가능합니다.(보유한 세금포인트×10만원 담보면제)
-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
 -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
 -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- ②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합니다.
- ③ 세금포인트 확인방법: 「국세청홈택스 - 조회 / 발급 - 세금포인트 - 세금포인트 조회」에서 확인 가능
- ④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.

[감수 : 서울지방세무사회 오의식 연수이사]

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완 일 올림